2017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

□ 지원확대

| 제도명 | 종 전 | 개 정 | 중건 등 (3년 평교 배출 |
|--|--|---|---|
|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5조) | [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] 중소 3%, 중견 1% 또는 2% ('17.12.31까지) [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] -중소 3% -'15년 신규상장 중소·중견 4% |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통합·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-중소 3%, 중견 1% 또는 2% -'15년 신규상장 중소·중견 4% ('18.12.31까지) |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(현행) 고용창출투자세액 정제: 3,000억메만 정시: 0,00억메만 중소기업 투자세액 |
|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(조특법 제7조의4) | ('18.12.31까지)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0.1% 또는 0.2% ('17.12.31까지) |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·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0.1% 또는 0.2% ('20.12.31까지) | 정 :1,500원 마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| 신성장동력 · 원천기술 R&D세액공제 (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) | 중소 30%, 이 외 20~30% ('18.12.31까지) | 중견기업(코스탁상장) 구간 신설 중소 30~40%, 중견(코스탁상장) 25~40%, 이 외 20~30% ('18.12.31까지) | 코스닥 상장기업 |
|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 (조특법 제29조의2) | 중소 10% (′17.12.31까지) |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 30%, 중견 15% ('20.12.31까지) |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|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(조특법 제29조의3) | 중소 10% (′17.12.31까지) |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 30%, 중견 15% ('20.12.31까지) |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| 근로소득증대세제 (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, 제3항) | 중소·중견 10%, 이 외 5% ('17.12.31까지) | 적용기한 연장 중소 20%, 중견 10%, 이 외 5% ('20.12.31까지) | 3,000억원 미만 |
| | (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) 중소 20%, 중견 10%, 이 외 5% ('17.12.31까지) | 적용기한 연장 중소 20%, 중견 10%, 이 외 5% ('20.12.31까지) | |
|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(내일채움공제)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(조특법 제29조의6) | 중소기업 근로자 50% ('18.12.31까지) |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 중소 50%, 중견 30% ('18.12.31까지) |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
| 제도명 | 종 전 | 개 정 | 중건/준 (3년 평균 매출 |
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용증대세제 (조특법 제29조의7) | 〈신 설〉 |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신설 (*20.12.31까지) (단위: 만원) (단위: 만원) (단위: 만원) (단위: 만원) (단위: 만원) (단위: 만원) (전기 지방) 중권 이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- 청년정규직, 장애인 등 1,000 1,100 700 300 |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|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(조특법 제30조의2) | 중소 700만원, 중견 500만원 ('17.12.31까지) | 중소·중견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 1,000만원, 중견 700만원 ('18.12.31까지) | 3,000억원 미만 |
|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(조특법 제60조) | 양도차익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('17.12.31까지) | 적용기한 연장 ('20.12.31까지) | 전체 중견 |
|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시 법인세 과세특례 (조특법 제61조) | 양도차익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('17.12.31까지) | 적용기한 연장 ('20.12.31까지) | 전체 중견 |
| 본사의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(조특법 제63조의2) | 7년간 100%, 3년간 50% 감면 ('17.12.31까지) * 감면대상소득 계산 - 과세표준 × Min(①, ②) ① 이전본사근무 인원비율 ② 이전본사근무 급여비율 |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소득 계산식 변경 ('20.12.31까지) * 감면대상소득 계산 - 과세표준 × 이전본시근무 인원비율 | 전체 중견 |
| 신·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(조특법 제118조 제1항) | 중소 50% ('17.12.31까지) | 중견기업*까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'19.12.31까지) | *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|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 (상증법 제71조) | 가업상속재산 연부연납은 가업상속공제*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 - (가업상속재산비율 50% 미만) 2년 거치 5년 납부 - (가업상속재산비율 50% 이상) 3년 거치 12년 납부 * 공제대상: 중소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 |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 허용 - (가업상속재산비율 50% 미만) 총 10년 납부 또는 3년 거치 7년 납부 - (가업상속재산비율 50% 이상) 총 20년 납부 또는 5년 거치 15년 납부 | 3,000억원 미만 |
|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(소득세법 제94조 제1항) | 〈신 설〉 | K-OTC*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·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신설 * 금투협이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| 후속 시행령 규정예정 |

□ 과세강화

| 제도명 | 종 전 | 개 정 | 중건/문 (3년 평균 '''를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 R&D 세액공제 (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, 나목) | [증가분방식] 중소 50%, 중견 40%, 이 외 30% | 공제율 축소 중소 50%, 중견 40%, 이 외 25% | |
| | 당기분방식]구분공제율(%)중소(유예포함)25중견 1~3년차15중견 4~5년차10중견 6년차 이상8이 외1~3** 1%+최대2%((R&D비용/매출액)×1/2)) | 공제율 축소 구분 공제율(%) 중소(유예포함) 25 중견 1~3년차 15 중견 4~5년차 10 중견 6년차 이상 8 이 외 0~2* ★ 0%+최대2%((R&D비용/매출액)×1/2)) | 5,000억원 미만 |
|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(조특법 제24조) | 중소 7%, 중견 5%, 이 외 3% ('17.12.31까지) |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축소 중소 7%, 중견 3%, 이 외 1% ('19.12.31까지) | 3,000억원 미만 |
|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) | 중소 7%, 중견 5%, 이 외 3% ('17.12.31까지) |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축소 중소 7%, 중견 3%, 이 외 1% ('19.12.31까지) | 3,000억원 미만 |
|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(조특법 제25조의3) | 중소 10%, 중견 5%, 이 외 3% ('18.12.31까지) | 공제율 축소 중소 10%, 중견 3%, 이 외 1% ('18.12.31까지) | 3,000억원 미만 |
|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(조특법 제100조의32) | 〈신 설〉 |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에 따른 제도신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(단, 중소기업은 제외) 또는 상출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투자, 임금증가, 상생협력출연금 등이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 과세 ('20.12.31까지) * 과세방식 : A, B중 선택 ④ [당기 소득 × ②% - (투자+임금증가+상생)] × 20% ⑧ [당기 소득 × ②% - (일금증가+상생)] × 20% ※ 60 ≤ ② ≤80, 10 ≤ ③ ≤20 세부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|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|
|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(법인세법 제13조) | 중소 100%, 이 외 80% |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중소 100% 이 외 (18귀속) 70%, (19귀속부터) 60% | 전체 중견 |

| 제도명 | 종 전 | 개 정 | 중건/준 (3년 평구 매출) |
|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인세율 (법인세법 제55조 제1항) | 과 표세 율0~2억원10%2~200억원20%200억원 초과22% | 법인세월 인상 과 표 세월 0~2억원 10% 2~200억원 20% 200~3,000억원 초과 22% 3,000억원 초과 25% | 전체 중견 |
| 가업상속공제 (상증법 제18조) | 중소·중견기업이 가업상속시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 *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(10/15/20년 이상시 200/300/500억원 공제) |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(10/20/30년 이상시 200/300/500억원 공제) | 3,000억원 미만 |
| | 〈신 설〉 | 중견기업 납부능력 요건 신설 *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 보다 큰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(19.1.1부터 시행) | 3,000억원 미만 |
|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(상증법 제45조의3) |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*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해 과세 *중소 50%, 중견 40%, 이 외 30% | 정상거래비율의 2/3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 (중소·중견기업 외 기업에 한함) | |
| | 〈신 설〉 |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거래 등에 대해서도 과세 신설 | · 5,000억원 미만 |
| |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| 중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변경 | |
| | (대기업) 세후 영업이익 × (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- 15%) × (주식보유비율 - 3%) | - (대기업) 세후 영업이익 ×(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- 5%) × 주식보유비율 | |
| | (중견기업) 세후 영업이익 × (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- 40%) × (주식보유비율 - 10%) | (중견기업) 세후 영업이익 × (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-20%) × (주식보유비율-5%) | |
| | - (중소기업) 세후 영업이익 × (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- 50%) × (주식보유비율 - 10%) | - (좌 동) | |
| 상속·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(상증법 제69조) | 산출세액의 7% | 공제율 축소 산출세액의 3% | 전체 중견 |